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2조의4부터 제2-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-2조의4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)

① 영 제118조의15제3항제2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18조의15제1항에 의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: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
2. 영 제118조의15제1항에 의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: 발행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이 동 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

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.

제2-2조의5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등) ① 영 제118조의15제6항에 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(이하 “게재사항”이라 한다)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행인은 기재사항 작성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,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 2. 기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, 표,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 3.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,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, 예측·추정·전망·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,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사항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제2-2조의6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) 영 제118조의15 제10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제2-2조의3 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자를 말한다.

제2-2조의7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기재 내용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)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사실 확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.

1.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

2.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
3. 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
4. 공시자료, 대법원 · 인터넷등기소 · 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검토
5.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
6.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 (제품구입처, 경쟁업체 등)로부터의 의견 청취
7.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및 검토
8.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2-2조의4(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) ① 영 제118조의15제3항 제2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영 제118조의15제1항에 의한 <u>모집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: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</u></p> <p>2. 영 제118조의15제1항에 의한 <u>모집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: 발행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이 동 발행인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</u></p> <p>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.</p>
<신 설>	제2-2조의5(온라인소액증권발행

인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) ①
영 제118조의15제6항에 의하여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
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
(이하 “게재사항”이라 한다)의
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행인은 기재사항 작성시
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
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, 알기
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
2. 기재사항의 작성은 투자자
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
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
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
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
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
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, 표,
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
있다.

3.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
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
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, 투
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
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
있는 표현, 예측·추정·전망·

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,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게재사항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-2조의6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) 영 제118조의15제10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제2-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2-2조의7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)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발행인에 관한 사실 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사실 확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수행하되 발행인의 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.

1.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
2.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

3. 발행인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

4. 공시자료, 대법원·인터넷등
기소·발행인의 홈페이지 및
홍보전단 등 공개된 자료에 대
한 검토

5. 언론보도 및 풍문을 통해 수
집한 정보에 대한 검토

6.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에
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
있는 제3자(제품구입처, 경쟁
업체 등)로부터의 의견 청취

7. 게재사항과 관련된 자료의
요구 및 검토

8.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
요한 방법으로서 감독원장이
정하는 방법